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유) 우리메디케어

우리요양원

Limited company **WOORI** Senior Sanato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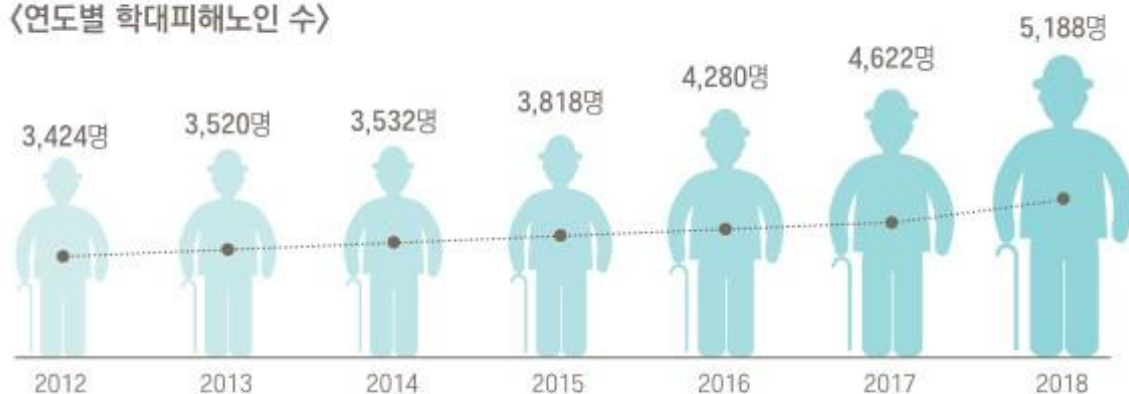
01

노인학대 현황

Q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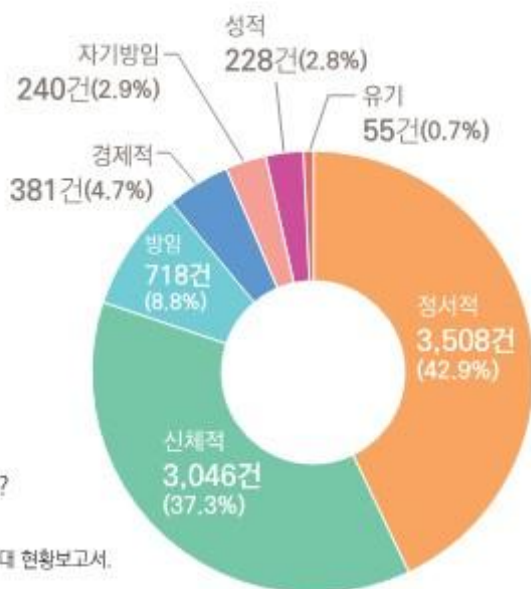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2 나는 신고의무자



Q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의 행동교정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3 노인학대 알아보기

노인학대의 특성

- ❶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❷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❸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❹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신체 구타·억압·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가둠,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장치·약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투입, 강제노동 등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03 노인학대 알아보기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노인의 통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함 등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야윈 등(자기방임: 스스로 식사거부, 비위생적인 집안환경 등)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의 사설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 장소에 버림 등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 바람직한 대처방안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A요양보호사는 중증치매를 앓는 B노인이 비위관(콧줄)을 자주 빼서 걱정이 가득하다. 치매와 고령으로 인해 식사만으로는 영양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통해 영양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계속 비위관을 빼는 바람에 사전 동의없이 양손에 억제대를 사용했다. 비위관을 다시 삽입할 때마다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이 경우 생명유지의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 바람직한 대처방안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뭐라고?”

“어르신,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내다보니 A노인과 B요양보호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A노인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요양보호사가 반말 섞인 말투와 큰 소리로 말하다보니 흡사 싸우는 것처럼 보여 행여 보호자들이 보고 오해할까 걱정된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소리의 높낮이와 강도에 대한 감지능력을 변화시켜 고음이나 큰 소리를 듣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되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크게 소리를 지르듯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반말을 하거나 이름만 부르는 등 노인을 어린아이 대하듯 해서는 안 되며, 직원교육을 통해 노인과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 바람직한 대처방안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시설 입소자 목욕문제로 보호자의 전화를 받은 K사무국장은 직원배치표를 골똘히 보고 있다. 보호자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아버지께 목욕서비스를 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설 내 요양보호사 중 남자직원이 너무 적어 모든 남자어르신들의 목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인복지시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가능한 노인과 동성인 요양보호사를 목욕서비스에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채용 등과 같은 방안으로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입소계약서에 의거하여 동의한 사항을 노인 및 보호자에게 인지시키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 바람직한 대처방안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요즘 C노인의 얼굴이 부쩍 어두워 보인다. 아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관리를 하는데 면회도 오지 않고 어쩌다 찾아오더라도 용돈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노인들은 자유롭게 물품도 구매하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C노인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인의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르신이 보호자에게 권리를 위임했어도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르신 개인 소유 통장 등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노인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어 노인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위임받아 관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에서 입출금내역 및 사용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두어야 하며, 분기별 또는 요청 시에 수시로 재정사용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 바람직한 대처방안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어르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 보실래요?”

“.....”

얼마 전부터 말을 걸어보아도 대답도 안 하시고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계신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프로그램도 모두 싫다고 하시며 식사, 약 복용도 거부하시는 M노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도 일손이 부족할 때는 M노인에게 유동식을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에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먼저 보호자에게 노인의 상태를 알리고,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에게는 그 증세 등을 기록으로 남겨 추이를 살피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편의를 위해 일반식 섭취가 가능한 노인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유동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혼자서 시간을 가지게 할 시에도 틈틈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 바람직한 대처방안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A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간다.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하신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보호자로서 부양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에 보호자에게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면회, 전화통화 등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어르신의 전원 및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05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자 관련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자의 욕구 : 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학대피해노인 관련정보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 안전여부, 긴급분리보호여부, 노인의 심신상태 등
-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
- 학대내용

○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

○ 학대 관련정보

- 학대 발생여부 : 학대유형, 학대정도 및 심각성,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등

○ 시설 관련정보*

- 학대내용 : 시설 관리·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시설 관련정보도 파악



노인학대 처벌기준



법률	내용	처벌
벌칙 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5조의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신설)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벌칙 제55조의4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7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제61조의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국번없이)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으로 방문하여 신고

노인학대 예방 공익브랜드

나비새김



노인학대 신고앱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다운받아 신고해 주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

다운로드
바로가기



Get it on
Google Play

다운로드
바로가기